

판 결

사 건 [redacted] 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

피 고 인

[redacted]

검 사

[redacted]

변 호 인

법무법인 태유

[redacted]

판 결 선 고

[redacted]

주 문

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.